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주택(주택의 부속토지, 주택분양권 포함) 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, 별표1)

(2021. 10. 19 시행)
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중개보수 요율결정	거래금액 산정
매매 · 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	⦿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×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(단,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)	⦿ 매매 : 매매가격 ⦿ 교환 :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⦿ 분양권 :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(융자포함) + 프리미엄
	5천만원 이상 ~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		
	2억원 이상 ~9억원 미만	1천분의 4	없음		
	9억원 이상 ~12억원 미만	1천분의 5	없음		
	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	1천분의 6	없음	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없음		
임대차등 (매매·교환 이외)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	⦿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×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(단,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)	⦿ 전세 : 전세금 ⦿ 월세 : 보증금 + (월차임액 ×100) 단,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: 보증금 + (월차임액 X 70)
	5천만원이상 ~1억원미만	1천분의 4	30만원		
	1억원 이상 ~6억원 미만	1천분의 3	없음		
	6억원 이상 ~12억원 미만	1천분의 4	없음		
	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	1천분의 5	없음	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없음		

※.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)

오피스텔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)

(2015. 1. 6 시행)

적용대상	거래내용	상한요율	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
전용면적 85㎡이하, 일정설비(전용입식 부엌,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)를 갖춘 경우	매매 · 교환	1천분의 5	「주택」과 같음
	임대차 등	1천분의 4	
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	매매 · 교환 · 임대차 등	1천분의 ( ) 이내	⦿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

주택 · 오피스텔 외(토지, 상가 등)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)

(2015. 1. 6 시행)

거래내용	상한요율	중개보수 요율 결정	거래금액 산정
매매 · 교환 · 임대차 등	거래금액의 1천분의 ( ) 이내	⦿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	「주택」과 같음

※ 개업공인중개사는「오피스텔(전용면적 85㎡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)의 매매 · 교환 · 임대차」,「주택 · 오피스텔 외(토지 · 상가 등)의 매매 · 교환 · 임대차」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

※ 위 중개보수에 「부가가치세」는 별도임.

서울특별시